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2가단526519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코리아

담당변호사 이보미, 김희성

피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상엽

변론 종결2023. 6. 8.

판결 선고2023. 8. 10.

주 문

1. 피고와 소외 C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관하여 일자불상경 체결된 양수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21. 3.경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225,695,580원 상당의 프로젝터 58대, 컴퓨터 20대 등을 이용한 프로젝터의 시뮬레이션, 프로젝터의 설치, 하드웨어 공급, 현장 설치 등의 업무를 제공하고, 대금은 2021. 9. 5.까지 모두 지급받기로 하는 시스템설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21. 3.경부터 2021. 5.경까지 시스템설치계약상의 용역을 모두 제공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52139호로 시스템설치대금의 소를 제기하여 2022. 5. 12.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118,695,5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2. 6. 3. 확정되었다.

나.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양수도계약

소외 회사는 2021. 5.경부터 2022. 7. 13.경 사이의 일자불상경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¹⁾ 하고, 피고에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시스템설치대금 채권은 2021. 5.경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체결될 당시 소외 회사는 국세를 체납하고, 원고 및 E, 기업은행, F저축은행 등에게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별다른

적극재산이 있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반증 없다. 따라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소외 회사로서는 이 사건 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할 경우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이 더욱 심화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어려워진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민법 제406조에 의한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는바, 이때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동산이고 그 현물반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취소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그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32468, 23475 판결 등 참조),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는 취소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양수도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진영

별지

1) 피고는, 이 사건 재판진행 중 형식적인 답변서만을 제출하였다가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야 참고서면으로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사용하게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와 이 사건 동산에 관하여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동산의 압류집행을 위하여 집행장소에 갔을 때 피고가 이 사건 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D(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기도 하다)이 집행관에게 '집행장소가 피고가 운영하는 곳'이라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점, ③ 이는 피고가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이 소외 회사가 아닌 피고에게 있다는 표현을 집행관에게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결국 이 사건 동산은 소외 회사가 점유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압류집행이 불능처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가 피고와 이 사건 동산에 관하여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반증 없다.